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안내(예비당첨자 포함)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 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필수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) 등 • 외국국적동포(재외동포)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발급용(발급용도 :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/ 제출처 : 드파인 아르티아) 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※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출입국사실증명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※ 단신부임은 입증서류 및 세대원 전원 제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)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“예”로 설정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직계존속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특수상병 포함하여 발급 ※ 발급기간 : 2023.06.19.~ 2026.06.19.
추가 서류		○	출입국사실증명	부양가족 산정 직계 존비속	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-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)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“예”로 설정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및 성명 등 전부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특수상병 포함하여 발급) ※ 당첨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2025.06.19.~ 2026.06.19.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	○	임신진단서 (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)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(임신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 가능해야함) •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• 임신의 경우(양식 : 견본주택 비치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자녀 입양의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
		○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•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주택을 소유한 경우 • 견본주택 비치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복무 기간 명시)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,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 된 경우 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	○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(주택소유여부 확인용)
부적격 통보 받은자		○	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해당주택	• 일반주택 :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• 무허가주택 :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• 폐가, 멸실주택 :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자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대리인 신청 시		○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/ 제출처 : 드파인 아르티아)
		○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**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6.19.(금)) 이후 발행분]**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**상기 서류는 발급 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‘전체포함’, ‘상세’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**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**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